

특 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

2017. 1.

특 허 청

특허심사제도과

1. 개정이유

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장의 특허출원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,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(제8조의2제1항 제3호)

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임직원 중 「변리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가 없도록 하던 것을, 해당 등록 변리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.

나. 우선심사 대상 확대(제9조제5호의4 신설)

특허청장이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대상에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추가함.

다. 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 확대(제19조제2항)

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

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특허청장이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내용을 추가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10. 11. ~ 11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, “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”를 “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(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4. 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 및 제3항”을 “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분류기호
2.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
3.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(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 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)

4.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
5.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
6.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
7.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
8. 법 제132조의3, 제133조의2,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
내용
9.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.

1. ~ 5의3. (생략)

<신설>

6. ~ 12. (생략)

제19조(특허공보) ① (생략)

②등록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

- 가.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: 성명 및 주소
- 나.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

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)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

-----.

1. ~ 5의3. (현행과 같음)

5의4. 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 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

6. ~ 12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특허공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분류기호
- 2.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
- 3.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

소재지

2. 출원번호 · 분류기호 및 출원 연월일
3.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
4.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
5. 등록공고연월일
6.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
- 6의2.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한다)
7.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
8.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· 도면 및 요약서(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· 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)
9.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
10.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 보정에 관한 사항
11. 법 제133조의2,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
12.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및 도면(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)

4.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
5.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
6.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
7.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
8. 법 제132조의3, 제133조의2,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
9.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(생략)

④ 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,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,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법 제87조제3항
및 이 조 제3항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<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243